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03월 31일(수)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6 누리빌딩 지하 1층
3. 회의목적사항

가.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실태보고, 외부감사인(지정) 변경보고

나.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제27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제3-1호): 사내이사 조송만 선임의 건

(제3-2호): 사내이사 김영덕 선임의 건

(제3-3호): 사내이사 한정훈 선임의 건

(제3-4호): 사외이사 신광조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조송만	1960.03.07	미해당	특수관계인	이사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영덕	1962.08.04	미해당	특수관계인	이사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한정훈	1967.11.03	미해당	특수관계인	이사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신광조	1970.09.08	해당	해당없음	이사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성명	주된 직업	주요 약력	해당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조송만	(주)누리텔레콤 회장	전) 누리텔레콤 창업자&대표이사 회장 현) 누리텔레콤 회장	해당없음
김영덕	(주)누리텔레콤 대표이사	전) 누리텔레콤 해외사업부 상무이사 현) 누리텔레콤 대표이사	해당없음
한정훈	(주)누리텔레콤 전무이사	전) 누리텔레콤 기술연구소 연구소장 현) 누리텔레콤 전략기획실장	해당없음
신광조	민웰엔터프라이즈	전) 에버넷전자 현) 민웰엔터프라이즈 지사장	해당없음

제4호 의안: 감사 송임석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 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송임석	1966.12.10	미해당	해당없음	이사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성명	주된 직업	주요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송임석	세무사	전) 국세청 국제조사과 전) 서울청 법무과 현) 세무사 송임석 사무소	해당없음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 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 368 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60 조 제 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 기간 : 2021년 3월 21일 오전 9시 ~ 2021년 3월 30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3) 의결권 행사방법

- 시스템 접속 (공인인증서 필수) 후 의안별 행사
- 전자위임장 양식 작성을 통한 대리 행사

(4)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5)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

(단,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

(2)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대리인의 신분증

2021 년 03 월 16 일

주식회사 누리텔레콤

대표이사 김 영 덕(직인생략)

※붙임. 정관 일부 개정의 건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제 1조【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누리텔레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NURI Telecom Co.,LTD.라 표기한다.</p>	<p>제 1조【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누리플렉스라 한다. 영문으로는 NuriFlex co.,Ltd라 표기한다.</p>	<p>- 사명 변경</p>
<p>제 2조【목적】 20. 위 각 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21. &lt;신설&gt;</p>	<p>제 2조【목적】 20. 건강기능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21. 위 각 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p>	<p>- 신사업 관련 내용 추가함.</p>
<p>제9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p>	<p>제9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 비상장 사채 등의 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p>
<p>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p>	<p>-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p>
<p>제18 조【전환사채】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8 조【전환사채】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p>
<p>제46조【이익배당】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제46조【이익배당】 ②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p>
<p>제33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제33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p>	<p>-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p>
<p>제33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단,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p>	<p>제33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p>	<p>-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p>

<p>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p>		
<p>&lt;신설&gt;</p>	<p>제33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p>
<p>&lt;신설&gt;</p>	<p>제33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⑤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 감사 선임 또는 해 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p>